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4
----------	-----

제출년월일 : 2025.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수수료 정비 및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신설로 수수료의 중복 규정 개선함 (안 제2조)
- 나.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여 명확성을 도모함 (안 제6조)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 10. ~2025. 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56호, 세정과-490(2025. 1. 10.)호

2) 규제심사 : 비규제 [기획예산과-1963(2025. 2. 3.)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963(2025. 2. 3.)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935(2025. 1. 14.)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503(2025. 2. 11.)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300(2025. 3. 17.)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으로 한다.

제6조 단서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토지·부동산 분야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7,000원	
2. 세정·공유재산 분야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3. 관광·문화·체육 분야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5,000원	
4. 경제 분야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5. 환경 분야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원	
6. 건설·안전 분야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7. 도시·주택 분야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8. <삭제>			
9. 농·수·축산 분야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	1건	10,000원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5,000원	
○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1건	5,000원	
○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5,000원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원	

※ 비고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u>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의 확인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u></p>	<p>제2조(적용) <u>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u> ----- ----.</p>
<p>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u>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6조(수수료의 반환) ----- ----- ----- ----.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u> 2. <u>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u>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p>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자. (생략)

<신설>

2. (생략)

②·③ (생략)

-----.

1. -----

-----.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고
1. 토지·부동산 분야				1. 토지·부동산 분야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삭제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삭제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삭제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삭제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삭제			
		1,0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칼라 1,500원		삭제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1건	7,000원		(현행과 같음)			
2. 세정·공유재산 분야				2. 세정·공유재산 분야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원		삭제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삭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건	800원		삭제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3,000원		(현행과 같음)			
3. 관광·문화·체육 분야				3. 관광·문화·체육 분야			
○ 공연장 등록	1건	10,000원		삭제			
○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삭제			
○ 유통관련업 등록(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현행과 같음)			
○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5,000원		(현행과 같음)			
○ 유통관련업 신고(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	1건	20,000원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 영화상영권 등록신청	1건	20,000원	
○ 영화상영권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종합)	1건	6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종합)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일반)	1건	50,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일반)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종합,일반제외)	1건	30,000원	
○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종합,일반제외)	1건	15,000원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	20,000원	
○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 수수료	1건	5,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등록	1건	10,000원	
4. 경제 분야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30,000원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원	
5. 환경 분야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	1건	5,000원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원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현행과 같음)			
삭제			
4. 경제 분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환경 분야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6. 건설·안전 분야				6. 건설·안전 분야			
○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현행과 같음)			
7. 도시·주택 분야				7. 도시·주택 분야			
○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현행과 같음)			
8. 보건·위생 분야				8. 삭제			
○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3항 관련)	1건	40,000원		삭제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20,000원		삭제			
○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4항 관련)	1건	100,000원		삭제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의료법 제33조제5항 관련)	1건	40,000원		삭제			
○ 치과기공소 등록 및 변경 수수료	1건	10,000원		삭제			
○ 안경업소 개설 및 변경(양도양수) 수수료	1건	10,000원		삭제			
9. 농·수·축산 분야				9. 농·수·축산 분야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현행과 같음)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	1건	10,000원		(현행과 같음)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5,000원		(현행과 같음)			
○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1건	5,000원		(현행과 같음)			
○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5,000원		(현행과 같음)			
○ 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삭제			
○ 양식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삭제			

현행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원	
○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1건	1,500원	
○ 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원	
○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1건	3,000원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 비료수입업 등록	1건	20,000원	
〈재지정〉			

개정안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삭제			
○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원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세정과장 정유진
연락처	(033) 330 - 2282